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58회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9인	2인
재적임원	9인	2인
참석임원	9인	2인

1. 일시 : 2026년 9월 15일(화) 16:00~19:00 (회의 소집 통보일 : 2026년 9월 8일)

2.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6 피어선빌딩 별관 3층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9) : 이계안, 김병환, 선권수, 김우영, 김영미, 이자희, 박승현, 이대화, 김지훈
- 감사(2) : 정재흠, 안상우

○ 불참 임원

- 이사(0) : 없음
- 감사(0) : 없음

○ 배석 교직원

- 법인(4) : 사무국장 박재순, 실장 김승현, 과장 임지윤, 담당 장다정
- 학교(2) : 교무처장 김정원, 기획경영본부장 백상미

4. 의안

제1호. 2026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제청 심의

제2호. 2027년 교직원 연구년대상자 선정 승인제청 심의

제3호. 교원 직위해제 승인제청 심의

제4호. 개방 이사 및 이사 선임 건

제5호. 기타 안건

- 1) 간서명 이사 결정 및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5. 개회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를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6 피어선빌딩 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황훈식 목사/신학과 교수(이하 '황훈식 목사')의 사회와 사도신경 봉독으로 예배를 시작하여, 찬송가 384장을 다 같이 부르고, 황훈식 목사가 대표 기도하다. 이어 다 같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8~15절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의 주제로 말씀을 전한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

(황훈식 목사 이석)

예배를 마친 후 이계안 이사장(이하 '이사장')이 이사 재적인원 9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이사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고 감사 재적인원 2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므로 개최를 선언하다.

6. 전차 회의록 보고

박재순 법인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 2026. 8. 26.(수)에 개최된 제257회 이사회 회의록과 주요 심의 사항을 보고하다.

이사장이 참석 이사들에게 회의록 내용에 대한 이견 유무를 확인하자, 지난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안이 먼저 처리되었으므로 제257회 이사회 제1호 안건에 포함된 정관 개정 관련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실제 처리 순서와 다르게 기록될 경우 대학의 직제규정을 먼저 개정한 후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결 순서에 맞게 회의록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에 제257회 이사회 회의록을 김우영 이사의 의견대로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하고, 김병환 이사의 동의와 이자희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7. 법인 및 위원회 현황 보고

사무국장이 법인 보고, 「정관」 관련, 위원회 현황 추가 및 변동 사항을 보고하다.

8. 심의 사항

[의안] 제1호. 2026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제청 심의

이사장이 '제1호. 2026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제청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상우 감사-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전반에 대한 재정분과

위원회 개최 결과를 종합하여 순차적으로 요약 보고하고, 법인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표기되었음을 설명하고, 교비회계 주요 논의 및 요구 사항으로 1) 수당지급기준표 구조 개선 및 형평성 확보, 2) 2.1재단 사업 수익 예산서 반영, 3) 교원 기준시수 미달 규정 보완 및 학사·구조조정 추진, 4) 인건비 대체 비율 확인표 작성 및 재정 모니터링, 5) 이월 자금 회계 처리 방식 변경 및 집행 관리, 6) 건축 기금 예산 반영 및 재정 건전성 의지 표명으로 적립금을 확보하여 향후 기채 상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설명하다.

□ 법인회계

○ 2026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업무회계]

구분	2026회계연도		증감		비고
	1차 추경예산	본 예산	금액	비율(%)	
수입예산	815,223,415	760,727,929	54,495,486	+7.16%	-
지출예산	815,223,415	760,727,929	54,495,486	+7.16%	-

[수익사업회계]

구분	2026회계연도		증감		비고
	1차 추경예산	본 예산	금액	비율(%)	
수입예산	3,586,103,355	3,527,861,573	58,241,782	+1.65%	-
지출예산	3,586,103,355	3,527,861,573	58,241,782	+1.65%	-

□ 교비회계

○ 2026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

구분	2026회계연도		증감		비고
	1차 추경예산	본 예산	금액	비율(%)	
수입예산	50,564,723,000	47,711,721,000	2,853,002,000	+5.97%	-
지출예산	50,564,723,000	47,711,721,000	2,853,002,000	+5.97%	-

이사장이 재정분과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이사들에게 의견을 묻자, 국고사업 등의 영향으로 급여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분과위원회가 지적한 주요 항목에 대해 대학 측에서 답변할 것을 요청하다.

교비회계의 첫 번째 지적사항인 수당 지급 기준표의 구조 개선 및 형평성 확보와 관련하여, 직책수당에 대한 교직원 간 지급 기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하며, 전년도에 전체 직책수당을 5% 감액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하다. 다만 세부적인 직책수당 간 형평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 및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하다.

직책수당 지급 기준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대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학장의 직책수당이 실장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또한 동일한 직책을 수행함에도 교수가 말을 경우 월 40만 원, 직원이 말을 경우 월 45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직책 수행자의 신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구조는 직책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다고 하며, 이러한 차등 기준이 교수는 업무를 적게 하고 직원은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설명을 들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다. 동일한 직책임에도 수행자가 교수인지 직원인지에 따라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지급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다.

본부장이 평택대학교의 직책 체계가 다른 대학과 현실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다른 대학의 경우 학장이 교무위원급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학장이 교무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학을 총괄하는 학장의 직책수당이 본부의 실장이나 센터장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직책에 대한 대우와 위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며, 대학 행정은 처장이 담당하더라도 단과대학의 학사 및 교원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은 학장이 수행하는 만큼, 대학 운영 과정에서 학장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지난 이사회에서 2.1재단 관련 사업을 금년도에도 추진할 예정이라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묻자, 본부장이 환경연구소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며, 관련 담당자에게 발전계획서를 마련하고 향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계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이번 예산을 보며 느낀 점을 언급하며,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500억 원대로 진입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현 이사진이 처음 참여할 당시에는 대학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나,

세코의 재정 기여가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수, 직원, 연구원, 조교 및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이 일심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대학의 재정 여건과 구성원들의 처우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다. 이어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자, 김우영 이사의 동의와 김영미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1호. 2026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제청 : 원안 승인

[의안] 제2호. 2027년 교직원 연구년대상자 선정 승인제청 심의

이사장이 '제2호. 2027년 교직원 연구년대상자 선정 승인제청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먼저 교원 연구년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교무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처장이 「교직원 연구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2026년 8월 17일 2027년도 교원 연구년 시행계획을, 8월 26일 신청 접수 결과를 보고하고, 9월 8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 선발을 심의하였다고 설명하다.

연구년 대상자들이 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용하는 조건인지 확인하고, 김우영 이사가 연구년 종료 후 의무복무기간을 질의하여 2년임을 확인하다.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구년 대상자는 5명으로 승인하되, 연구년의 시작 및

종료 시기, 잔여 재직기간 등 기간 관련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연구년 시작 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대상자들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것을 제안하자, 선권수 이사의 동의와 이사회 이사의 제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이사장이 직원 연구년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본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자, 본부장이 직원 연구년도 교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17일 시행계획 수립, 8월 31일 접수 현황 보고를 거쳐 9월 2일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고 설명하다.

이어 본부장이 그동안 이사회에서 교원과 직원의 연구년 제도를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직원 안식년 규정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하며, 노동조합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교원 관련 규정안과 함께 교무위원회 및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개정안은 직원 안식년의 목적을 자기개발, 재충전 및 직무역량 강화에 두고, 시작 시점을 3월과 9월로 축소하며, 분할 사용을 삭제하고 동일 부서 동시 사용을 1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직원 채용 및 인사는 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 구조로 이사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데, 직원 연구년 대상자 선정만 이사회에 상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며, 이사회에 임용권이 있는 교원과 달리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본부장이 그동안 교원과 직원의 연구년 제도를 통합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해 온 것이라고 답하다.

현행 규정 제8조에 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년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자, 이를 확인하면서도 향후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 연구년 대상자는 총장이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다.

이사장이 금번 직원 연구년 대상자 선정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제안하자, 김병환 이사의 동의와 김지훈 이사의 제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2호. 2027년 교직원 연구년대상자 선정 승인제청

- 교원 연구년 : 조건부 승인(5명) 및 관련 규정 정비

순번	소속	현 직위	성명	연구년 승인 기간	승인 여부
1				2027.01.01.~2027.12.31.(12개월)	여
2				2027.01.01.~2027.06.30.(6개월)	여
3				2027.07.01.~2028.06.30.(12개월)	여
4				2027.07.01.~2028.06.30.(12개월)	여
5				2027.01.01.~2027.12.31.(12개월)	여
6				2027.01.01.~2027.12.31.(12개월)	부
7				2027.01.01.~2027.12.31.(12개월)	부
8				2027.07.01.~2027.12.31.(6개월)	부

- 직원 연구년 : 총장에게 위임 및 관련 규정 정비

• 제3호. 교원 직위해제 승인제청 : 원안 승인

[illegible]

[Handwritten signature]

[의안] 제5호. 기타 안건

- 1) 간서명 이사 결정
- 2)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이사장이 '제5호. 기타 안건'의 '1) 간서명 이사'를 이사장, 이대화 이사, 김지훈 이사로 하고, 회의록 비공개 범위는 제3호 및 제4호 안건과 보고사항은 비공개로, 제1호 및 제2호 안건은 관련 법령과 본 법인 이사회 정보공개 지침에 따르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김병환 이사의 동의와 김우영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5호. 기타 안건**

- 1) 간서명 이사 결정 : 이사장, 이대화 이사, 김지훈 이사
- 2)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 제3호, 제4호, 보고사항 : 비공개
 - 제1호, 제2호 :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 정보공개 지침에 따름

9. 폐회

이사회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이사회 이사의 동의와 이대화 이사의 재청으로 폐회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고 19시 00분에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26. 9. 15.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 이 계 안

이계안

이 사 김 병 환

김병환

이 사 김 영 미

김영미

이 사 김 우 영

김우영

이 사 김 지 훈

김지훈

이 사 박 승 현

박승현

이 사 선 권 수

선권수

이 사 이 대 화

이대화

이 사 이 자 희

이자희

감 사 정 재 흠

정재흠

감 사 안 상 우

안상우